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52
----------	------

2021년 6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1년 5월 10일
- 발의자: 손인수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2021년 5월 11일
- 상정일자: 2021년 6월 15일
- 의결일자: 2021년 6월 15일
 -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 의결결과: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과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갈등관리전문가 등 위촉과 비밀유지,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붙임 1)
- 예산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5. 검토 의견

-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오늘날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 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행정기관 간에 이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함
 - 이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2007년 2월 12일 제정되었음
- 다만,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세종시청에서는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가 없는 상황임
- 또한, 교육현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행위자들 간 관계의 밀도가 높아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쉽게 심화되고, 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집단 민원과 갈등이 제기되기 쉬운 구조임
 - 특히, 교육갈등은 다른 분야의 공공갈등에 비해 집단 간 가치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이 공개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갈등 조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촉발되는 교육갈등에 대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됨
-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및 공유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에서는 교육정책 수립·시행·변경 시 필요할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8조)에서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육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결과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위촉·지정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비밀유지,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은 교육갈등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등 다양한 갈등예방 및 해결과 갈등유발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갈등이 표출되는 현재 상황에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각종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 다만, 교육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실태 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사항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6곳)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 7. 16.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 12. 1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 11. 12.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1. 2. 19.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	'20. 11. 5.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1. 4. 5.

6. 토론: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없음

10. 기타사항: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법령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 교육갈등의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이 교육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의견수렴의 절차, 조정 등 분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 전문가 등의 위촉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지정 또는 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 협의회 구성원,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օ)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9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의회 의원 손인수